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나519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나5197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7가단1820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박현태, 도진기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장지원

변론 종결 2020. 10. 29.

판결 선고 2020. 12. 3.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7가단1820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2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20. 12. 3.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부터 이 사건 2018.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부터 이 사건 2018.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동업관계 종료 후 원고에게 잔여재산분배 내지 동업정산에 따른 정산금지급을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몫의 이 사건 빌라 L호를 무단으로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 3억 3,000만 원에서

원고 부담분을 공제한 나머지 136,1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몫의 이 사건 빌라 L호를 3억 3,000만 원에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과 원고 부담금간의 차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원고 부담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제1심 공동피고 C, D가 2007. 11. 2.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당시 피고에게 169,788,000원을 지급하고, 6,500만 원의 채무부담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C, D가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이들이 미납한 출자금의 지급으로 보이고(출자하기로 약정한 2억 4,000만 원에서 실제로 출자한 3,000만 원과 J으로부터 정산받은 1억 2,000만 원을 지분별로 정산한 3,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지불약정한 6,5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의 준공, 등기 등과 관련하여 소요된 각종 비용에 대한 C, D의 부담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피고는 피고와 C, D가 정산한 금액이 원·피고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금액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출자금 169,788,000원과 비용 등 6,500만 원을 합한 234,788,0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C, D 사이의 내부 문제로 D가 자신의 부담금 3,250만 원에 C의 부담금 3,250만 원을 합하여 피고에 대하여 합계 6,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부담금도 3,25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작성의 현금보관증에는 D가 C의 부담금까지 부담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2007. 11. 2.자 정산합의 이후 피고가 상당한 액수의 세금, 등기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를 자신에서 피고로 변경함에 따라 원고 앞으로 양도소득세 90,364,820원이 부과되었고 이는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364,820원 또는 그 1/4인 22,591,20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원·피고 및 C, D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가 위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원고 주장의 양도소득세가 정산되어야 한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무분담 약정을 하면서 정산되어야 하는데 원·피고 및 C, D 사이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납출자금 169,788,000원과 비용 등 6,500만 원으로 정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거나 위 액수를 정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L호 매각대금 3억 3,000만 원에서 원고의 부담분 234,78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5,2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7.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을 최고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전에 이행의 최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부분을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정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8,8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피고는 2008. 9. 8.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채권관계를 포함하여 각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6, 17, 21, 25,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그의 남편 S은 2007. 5.경 원고의 소개로 서울 영등포구 T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7억 7,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07. 8. 17. 피고 및 S에게 '원금 7억 7,000만 원, 이자 3억 8,500만 원 합계 11억 5,500만 원을 2007. 8. 2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이행각서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2008. 3. 5. 피고 및 S에게 3억 2,6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2008. 9. 8. S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의서

- 원고

S과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합의한다.

- 다음 -

S이 서울 강서구 U상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2008.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원고와 2007. 8. 17. 작성한 현금보관증상의 채권관계는 정산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S과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V아파트 W호상에 2007. 9. 11.

접수번호 제204814호로 설정한 가압류(서부지방법원 2007카합1583, 1억 5,000만 원)에 의해 보전된 채권의 효력은 유지된다.

* 첨부서류

2007. 8. 17.자 현금보관증 사본

다) 이후 S은 2008. 10. 28. 원고의 아들 X 소유의 서울 강서구 U 대 195m²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6억 4,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작성하였다.

3) 정산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채권관계를 포함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정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합의서는 정산의 대상이 '2007. 8. 17. 작성한 현금보관증상의 채권관계'임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고, 위 현금보관증을 첨부서류로 부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동업약정에 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만약 원·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채권관계까지도 정산하고자 하였다면 그와 같은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는 합의 당사자가 '원고와 S'이라는 점을 분명히 정하고 있다. S이 피고의 남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S이 이 사건 동업약정에 관여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S 사이의 합의서를 피고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이상, 이에 따른 정산대상은

2007. 8. 17.자 현금보관증상 채권관계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위와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를 해석하게 되면, 원고는 그 아들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뿐 아니라 이 사건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1억 원에 가까운 청구채권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인데, 합의서의 문언을 넘어 원고에게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한 채권관계가 이미 발생한 상태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동업체가 해산된 때로부터 10년 가까이 피고에 대하여 정산금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동업약정에 관한 채권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영환

판사강문희

판사김현성